

인천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나681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나6813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8가소7239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강

담당변호사 조영진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민기, 이윤수

변론 종결 2020. 7. 3.

판결 선고 2020. 9. 25.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8가소7239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80,880원 및 2018.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개명 전 D) 소유의 E 티볼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소유의 G 쏘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4. 11. 17:50 무렵 인천 계양구 H을 북쪽에서 남쪽으로(별지 사고약도 기준 I 방면에서 J식당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K동 주민센터 앞에서 L로 좌회전하여 약 20m를 진행한 뒤 좌측에 주차된 피고 차량보다 약 1m 가량 뒤쪽에서 피고 차량과 나란히 정차하였다. L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도로 폭은 차량 3대가 교행할 수 있을 정도이고, 원고 차량이 정차할 당시 위 도로의 좌우로 피고 차량을 포함한 여러 대의 차량이 평행주차되어 있었다.

다. M은 자전거를 타고 H을 남쪽에서 북쪽으로(별지 사고약도 기준 J식당 방면에서 I 방면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K동 주민센터 앞에서 L로 우회전하였는데, 정차한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원고 차량 좌측으로 진행하였으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사이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전거의 좌측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및 우측 후미등 부분을 충격하고, 자전거의 우측 핸들과 패달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문과 뒷문 사이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위 추돌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2018. 6. 12. M의 치료비 4,880,8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M의 치료비 765,7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M의 총 손해액은 5,646,640원(= 원고가 지급한 4,880,880원 + 피고가 지급한 765,760원)이다.

바. 한편 원고는 N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위 4,880,880원을 구상하는 내용의 심의청구를 하였다. N위원회는 2018. 10. 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책임비율을 85%, 피고의 책임비율을 15%로 인정하고, 피고가 위 4,880,880원 중 15%에 해당하는 732,132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은 불법주차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는 반면 원고 차량은 어떠한 과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M에게 4,880,8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880,8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1)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뒤 공간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M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은 과실이 없다.
- 2) 설령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및 원고 차량 우측에 주차된 차량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10%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M이 입은 총 손해액 5,646,640원의 10%를 초과하는 765,7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부당이득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좌우로 황색 실선이 그려져 있으므로 피고 차량이 주차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구역에 해당하는 사실, M은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 중간에 정차한 원고 차량을 피하려 원고 차량 좌측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그곳에 불법주차를 한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차량이 불법주차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M은 원고 차량을 피해 좌측으로 지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불법주차를 한 것 자체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M에게 보험금 4,880,880원을 지급함에 따라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지점 주변 도로는 사람과 차량이 교행하는 좁은 골목길인 점, ② 그런데도 M은 K동 주민센터 앞 삼거리에서 우측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우회전을 한 점, ③ M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주차할 당시 불법주차 사실과는 별개로 자전거가 후미를 충격할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10%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이미 M에게 총 손해액의 10%가 넘는 765,7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M에게 보험금 4,880,880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광우

판사오희록

판사윤성현

별지